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시 : 2026. 8. 14.(금) 15:30 ~ 17:00
- 장소 : 개나리홀
- 참석 : 심의위원 8명
법무의회팀장(사회) 등 3명

□ 회의내용

- 회의 개회 선언(법무의회팀장)
-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구청장)
- 선서문 낭독(최성용 위원)
-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비공개 결정
- 위원장 호선(법무의회팀장)
- 위원장 선출 : ○○○ 위원으로 선출
- 월정수당 금액 결정
 - '27년 월정수당 공무원보수인상률(3.5%)로 확정 : 2,616,720원
 - '28~'30년 월정수당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반영으로 확정
- 의정활동비 금액 결정
 - 연간 1,800만원(월 150만원)으로 결정
 - 주민의견수렴방법은 공청회로 결정
-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일자 결정 : 2026. 10. 8.(목) 10:00(개나리홀)

□ 회의록

- 법무의회팀장: 먼저,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7항에 따라,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 공개란 회의에 주민들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방청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 방청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도 회의록, 위원명단 및 결정금액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의 같은 경우 공개하게 되었을 때 위원들 서로가 같이 합의 맞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게 되다보면 매끄럽지 않을 상황이 있어서 비공개를 추천합니다.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법무의회팀장: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셔야하기 때문에 비공개에 동의 하시는지 거수하겠습니다.
- 거수
- 법무의회팀장: 결과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하겠습니다.
- 법무의회팀장: 다음은, 2026년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거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저는 의원활동도 하셨고 회의를 주재하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 되는 ○○○ 위원을 추천합니다.

- 법무의회팀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 법무의회팀장: 그럼 ○○○위원님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원활한 원활하게 심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늘 회의 안건은 월정수당 기준의 결정의 건과 의정 활동비 기준의 결정의 건, 그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실시방법 및 향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한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의회 진행에 앞서 법무의회팀장으로부터 오늘 의회 안건 및 참고 자료를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의회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의회팀장: 그럼 회의 안건 및 참고 자료에 대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하며 위원님들께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방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금액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금일 개최하는 1차 회의에서는 의정비 최대 범위를 잠정적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실시 방법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주민의견수렴방법이 여론조사로 결정될 경우 설문 문항 등을 결정하기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 법무의회팀장: 반면, 공청회로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장님을 주재자로 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후 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사항은 10월 31일까지 의회에 통보하며, 의회에서는 결정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 월정수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첫 해인 2027년엔 확정 금액으로 결정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확정금액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또는 인상률의 2분의 1 반영 등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결정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 삭감을 결정해야 하며, 2026년도에 공무원보수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법무의회팀장: 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 및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20만 원을 합한 110만 원이 상한액이었으나 2023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액이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비의 기준 금액을 결정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남동구는 2023년 법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 상향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전국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기준 금액이 동결되어 현재까지 월 1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참고사항 1번 자료를 보시면 2026년도 현재 인천시 타 군·구 의정활동 및 현황입니다.

- 법무의회팀장: 인천시 제물포구, 영종구, 계양구, 강화, 옹진군은 지난 2024년 의정활동비 개정 시 150만 원으로 법정 상한액으로 상향했으며, 그 외에 5개 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상향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선에서 5개 군·구가 상한액 미만으로 산행했고, 남동구만 유일하게 동결된 상황입니다. 의정비 산출 시에는 지역 주민 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고려 사항 및 참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법무의회팀장: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자료는 2025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남동구 주민등록 인구는 47만 9천 명이며, 1인당 인원 수는 2만 6,600명입니다. 남동구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의원 1인당 주민 수 또한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2026년 현재 16.48%로 2022년 대비 약 3.8%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자체 세입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상경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은 자치 법규 현황과 회계 일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회계 일수는 89.5일이며,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재·개정 건수는 12.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남동구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법무의회팀장: 다음은 29페이지 참고사항 5번 의정 및 결정 요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 월정수당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월 8만 8천 원, 연간 약 107만 원이 인상됩니다. 또한 2028년부터 전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의정활동비를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 금액으로 조정할 경우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의원 1인당 연간 480만 원, 의원 전체로는 8,640만 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회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의정비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먼저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공청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개회부터 종료 시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주요 내용들을 공고해야 하며,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의 통장 및 의장 등을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구청장이 선정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금액과 그 결정 사유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며, 공청회 결과와 회의록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공청회를 실시할 경

우 참석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 반면, 남동구의 의정비 수준, 타 지자체 사례 등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참석자들이 자료를 접한 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여론조사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며 조사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설문 문항은 사전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 법무의회팀장: 조사는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반영하여 선정된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면접원이 질문을 읽고 응답을 즉시 입력하는 CATI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반면 무작위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좀 더 많은 사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의정비 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비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결정된 의정비는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법무의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안건은 월정수당 기준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2027년도 월정수당은 확정 금액으로 결정해야 하며 2026년도에 공무원보수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하였을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표현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에 나오는 월정수당 결정 시 보류 상황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 의회에서는 현재 월정수당을 2026년 공무원보수인상률 3.5%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는 이에 귀속되지 않고 금액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 ○○○: 아니 이번 백데이터가 지금 보통 이제 의정 의원들 급여라고 하면 의정수당 플러스 월정수당이잖아요. 그럼 지금 인천 11개 군·구 전체 합해가지고 월정수당하고 의정비가지고 금액으로 비교된 게 있어요?
- 법무의회팀장: 지금 바로 자료 배부 해드리겠습니다.
- ○○○: 거기에서 남동구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 ○○○: 제일 낮죠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 ○○○: 아니 그 월정수당까지 합해가지고 제일 낮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연수도 있고 그 밑에 부평구 있고
- ○○○: 의정활동비가 제일 낮다는 말씀이지않나요?
- ○○○: 실질적인 건 이제 월정수당 플러스 의정활동비가 급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사실 4,354만원 인거 같은데
- 법무의회팀장: 연수구, 옹진군 다음입니다. 낮은 순입니다.
- ○○○: 그리고 지금 타 군·구에 의정비심의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이 지금 시작 단계인가요? 금액을 확정된 데가 있나요?

□ 법무의회팀장: 아니요. 지금 확정된 곳은 없고요. 기존에 이제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150만 원으로 상향이 되어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심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진행을 안하고 있고요. 상향이 안 된 자치단체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가장 빠르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된 자치단체는 없어 보통 8월 말에서 9월에 첫 번째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 ○○○: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월정수당이 있고 의정활동비가 있잖아요. 근데 월정수당 같은 경우는 구민 수에 비례해서 공무원보수인상률을 3.5% 인상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의회에서 더 받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150까지 올려놨는데 다른 시·군·구는 150으로 40 올린 데도 있고 20 올린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만 전국에서 최초로 한 푼도 1만 원도 못 올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타 군·구 대비 인구 수, 의원 수 등 전반적으로 남동구가 상위에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최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국 공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를 좀 해줘야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동구 의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비라는 게 적으면 적고 크면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상향으로 좀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구의 재정자립하고 재정 절차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자체가 지금 워낙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를 올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에 맞게 어떤 대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가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예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 법무의회팀장: 일단은 지금 의정 활동비 자체가 저희가 의정비 자체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금액이고요. 그전에 이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세입 대비 세출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이제 세출이 세입이 잡히는 거에 대비해서 세출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인 규모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이제 남동구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게 가용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비 자체 가용 예산이 아주 없지는 않고 어느 구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용 재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100억 원 이상은 잡을 수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100% 할 수는 없어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이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 그렇다고 하면 저희 남동구가 어딜 가도 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입장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일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적어도 의정활동비 정도는 현실에 맞게 다른 부분하고 같이 어떤 보조를 맞춰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법무의회팀장: 일단 지금은 저희가 월정수당의 금액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할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 ○○○: 그럼 3.5%만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 ○○○: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초과하게 되면 주민의견수렴을 해야 합니다.
- ○○○: 공무원 연 올라가는 인상률만 한다는 내용이니까요.
- ○○○: 아니 그 이상을 올려도 상관없는데 여론조사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 그것까지 손을 댄다고 하면 엄청 커집니다.
- ○○○: 110만 원에 3.5%면 얼마 정도 돼요?
- ○○○: 아니 그거는 월정수당하고 달라요.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50만 원이 맵시몹이예요.
- ○○○: 그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 법무의회팀장: 현재 월정수당은 월 253만 원입니다.
- ○○○: 의정활동비를 다른 구하고 맞춰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 3.5%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 ○○○: 월정수당은 그대로 놔두고 의정 활동비만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좀 맞춰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이게 사실 의정 활동비가 110에서 150으로 한도 상향하기 전에는 지금 월정수당을 봐도 10개 군·구 중에서도 남동구가 월정수당은 가장 많잖아요. 월정수당만 따지고 보면 그전에는 지금의 행정구역이 개편돼가지고 11개지만 10개 군·구 중에서 남동구가 가장 많았어요.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래도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에 참여한 경험을 보면 그때도 여론조사로 결정을 했다고 하다가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여론조

사를 하는 게 항목을 만들어놓고 붙이고 시민들한테 얼마를 받는데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하나하나 똑같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라는 의견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기속이 되어야하게끔 규정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상향이 안 된게 남동구가 포함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현실화 해서 참고 해야 될 것 같아요.

□ ○○○: 질문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 의정활동비를 동결하여 인상을 안 한 이유는 월정수당액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개를 합쳐서 균형을 맞춘다는 개념으로 동결한 건가요?

□ 법무의회팀장: 그건 아닙니다.

□ ○○○: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수렴조사 방법 중 공청회가 있고 여론조사가 있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다 공청회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국민들이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긍정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부정적인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동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 ○○○: 여론조사 결과가요?

□ ○○○: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23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전국 최하로 받았으니까 이제 저희 후배 의원들은 좀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 현실적으로 안에서 구의회를 바라 볼 때는 현실화 문제도 있는데 그 또 국민들을 바라보고 지금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면 또 이런 걸 또 안 들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남동구가 재정자립도가 어떻고 해도 사실 리딩 보잖아요. 이게 구의회 정책지원관보다도 구 의원을 보좌해 주는 정책지원관보다도 인건비가 낮다 이런 얘기를 하

는 것 같아요. 이런 여건들은 충분히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밖에는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 국민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밖의 시각도 좀 보고 그래서 해안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 ○○○○: 네 맞습니다. 국민들이 의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긴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구의원들이 정말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연구단체를 해가지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신경 좀 써주셔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 ○○○○: 다른 얘기 많이 나와봤자 의미도 없고 여기서 그러면 결정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 ○○○○: 아니 지금 만약에 이게 지금 안전이 월정수당을 공무원 인건비 이상으로 할 거냐 그 안에 포함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걸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오면 되지만 또 이게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제가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저희가 의정활동비 부분은 어느 정도 인상을 감안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를 나눠서 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의정활동비를 인상을 못하고 월정수당을 옮겨서 올려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의정활동비를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고 하면 150이 되든 아니면 그 근처가 되든 이걸 인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고 그러면 월정수당을 계산할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같이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따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상률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인상을

할지를 감안을 할 때 그 부분까지도 계산을 하는 게 그렇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다 합했을 때 이제 그런 거 그것까지 또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인상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 ○○○: 일단 의정활동비는 150이 맥시мум이 맞죠?
- ○○○: 네 맞습니다
- ○○○: 그런데 110까지 이렇게 계속 동결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150까지는 가야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월정수당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110이 제일 낮아요.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지역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사기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의정 활동비는 150 정도 최대한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그러면 월정수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월정수당은 그냥 상승률 반영해서 3.5% 그거는 연마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 ○○○: 5%를 초과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 ○○○: 여기 담당하시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월정수당이 지금 나가는 게 동결도 할 수 있는 거고 상향 올릴 수도 있고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여론조사나 설명회를 통해서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죠?
- 법무의회팀장: 맞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서 인상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견수렴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 ○○○: 그러니까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데요. 동결이나 인상률만큼 올릴 거냐 아니면 더 내릴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안건에서는 의정활동비 부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 법무의회팀장: 네 지금은 월정수당을 먼저 결정해주셔야합니다. 월정수당을 2027년에는 정액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만약에 적용하는 결로 결정을 하시면 이제 올해 월정수당의 3.5%를 더한 금액을 내년도 월정수당으로 기준 금액을 잡고요. 2028년부터 이제 향후 3년간 적용할 금액을 이제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할 것인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만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 1호봉에서 2호봉이 되면 거기에 호봉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월정수당이라는 거 똑같이 이 보수 기준에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논의할 거는 의정활동비예요.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게
- ○○○: 지금 이제 좀 결정해야 될 게 의정활동비가 아니라 월정수당 기준으로 정하자는 거니까 그것부터 종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의정 활동비로 넘어가자
- 법무의회팀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게 되면 월 8만 8천 원 정도 오르게 되고 연간 107만 원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의견 끝나셨죠? 그러면 의견을 종합하여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3.5% 금액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 위원장: 그럼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월정수당 대비 3.5% 증액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다음은 2028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의 당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만큼을 합산하여 산정되도록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할 것인지 그 범위 내의 비율 예를들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2분의 1로 정할 것인지 등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의회팀장: 이 부분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전년도 월정수당에 당해 연도에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을 상향할 것인지를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아까 기준 금액 3.5%를 얘기하듯이 똑같이 그 후에도 3.5%씩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번 의결했는데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뭐
- ○○○: 아니요. 매년 달라지는 인상률에 맞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 제가 이제 저는 시민단체에서 왔는데 의정비가 확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제 조심스럽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돼요. 다만, 이제 의정활동비를 상향해야 된다고 하는 저도 이제 생각이 있고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기본 액수의 한 10% 이상은 상승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구들은 이미 150을 다 받기 때문에 아마 월정수당에서 3.5%이상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남동구의 지금 금액이 거의 4800? 4900까지도 이제 가는 상황이 이게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다른 구가 여론조사나 공청회 쪽에서 3.5% 이상 물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부분이 조금 네 저도 이제 올려야 된다고 한 건 있지만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좀 더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 일단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월정수당액을 2028년부터 30년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문제고 사실 의정활동비 부분은 저도 우리 ○○○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 150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낮춰야 될 것인지 문제는 조금 다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8년부터 3년간 연동률에 맞춰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님도 별로 의견이 이의가 없으신 거였죠?
- ○○○: 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 ○○○: 공무원 수준의 3.5%든 1.5%든 그거는 오르는 상향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는 게 맞고 저희가 주로 논의를 해야 될 게 좀 다 같이 이제 합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의회는 의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만 따로 얘기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우리 심의위원회의 취지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3.5% 1.5%든 이전 공무원 수준에 맞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올린다고 그러면 올려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인상률 분에서 그냥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논의를 할 게 이제 의정활동비를 어느 정도 올렸을 때 합산을 했을 때 이게 좀 다른 데보다 좀 과하지 않나 이런 거 그때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주시면 되지 않았나 싶긴 했습니다.
- ○○○: ○○○ 위원님 의견에 어떤 공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액수가 4,900까지

- 위원장: 2010년도에 여기 처음 들어와서 의원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하고 똑같이 동결되어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대로있나 생각이 근데 이제 2년 반 전에 올리려고 하다가 남동구만 못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다올랐는데 남동구만
- ○○○: 지금 의정활동비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월정수당부터 빨리 결론을 지어야 되겠네요.
- ○○○: 인구 수 대비 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인천에는 저희가 남동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서울에 강남이나 이런 데는 거의 무슨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 수 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55만까지 갔다가 지금 47만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에비해 훨씬 못미치는 지자체도 있구요. 55만이 저희가 갔을 때도 똑같았기 때문에 월정수당이라는 게 인구 수 대비해서 그만 만큼의 수당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월정수당은 빨리 결정하시죠
- ○○○: 3.5%가 됐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거는 향후 공무원 임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준으로 가는 것이
-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의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다음은 두 번째 안건에 의정활동비 기준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현행 월 150만 원 이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저 잠깐 팀장님 우리 여기 이것까지 다 해야하는 건가요?
- 법무의회팀장: 네 맞습니다. 의정활동비 결정하고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저희가 주민의견수렴방법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랑 다음 회의 일정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 의정활동비를 150만원 결정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해도 해당 금액만큼 못올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 법무의회팀장: 네 맞습니다.
- ○○○: 저는 기본적으로 인상은 하되, 아까 ○○○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현재 기준을 보았을때 미추홀구가 제일 높거든요. 거기보다도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월정수당은 다른 군·구도 올릴 거 아니에요? 최소한으로는 미추홀구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요?
- ○○○: 여기 계시는 분들의 저기 뭐야 그 마음가짐이 뭐냐 하면 처우 개선이잖아요.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의 모든 거는 처우 개선입니다. 대신에 그만큼의 우리가 인상을

해줬는데 그때 엉망진창을 한다든가하면 그때 질책을 해야죠.

- ○○○: 아니 이게 의정활동비가 개정 전에는 사실 남동구가 가장 많았어요. 10만 원이 많든 20만 원이든 가장 많았던 건 맞습니다.
- ○○○: 4년 동결은 또 피해를 받긴 받았잖아요.
- ○○○: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해주면 인상이 큰 거네 3.5%에다가 110에서 150이 되면
- ○○○: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40 올린다 그러면 저희는 다 올려준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근데 다른 데가 150에 받는 데가 많잖아요.
- ○○○: 아까 저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추홀구하교의 형평성을 유지하면 적어도 40 더 올려주는 것도 우리 남동구의 어떤 체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잡아서 미추홀구 기준으로 잡아서 150으로 올려주는 건 어느 정도 일견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 법무의회팀장: 지금 저희 남동구가 가장 먼저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천시 타 군·구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그런데 이게 또 뭐냐 하면 남동구가 처음으로 이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해서 결정을 해놔버리면 다 연동돼서 바로 그래서 거기다 그만큼 이상은 다 올려요.
- ○○○: 근데 중요한 게 의정활동비가 맥시мум이 15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더 이상 올릴 수는 없다는 거죠?
- ○○○: 그렇죠

- ○○○: 이게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민들한테 각 구의 총액이라든지 월정수당이나 의정 활동비를 이렇게 공개한 상태에서 수렴하게 되나요?
- 법무의회팀장: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공청회와 여론조사 방법이 있는데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데 여론조사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금액 범위만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그동안 여론조사를 몇 번 했을 텐데
- 법무의회팀장: 네 그래서 지난번 2024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 ○○○: 저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안타깝지만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동결되었던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열심히하는 의원들 생각해서 이번에는 40 인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 ○○○: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별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결과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은 150만 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결정된 의정활동비 기준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므로 세 번째 안건인 주민의견수렴방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전번에 아쉬웠던 여론조사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공청회로 어떻게 추진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법무의회팀장님 설명과 같이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은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중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공청회로
- ○○○: 공청회로 진행하는 것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또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질문 사항에 따라서 왜곡될 수가 있어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 공청회 가장 지금 장점이 지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어서 직접 그 자리에 여론조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이런 전화나 유선으로 다 하는 설명할 수 없고 그냥 금액에 대해서 예스 노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니까
- ○○○: 공청회는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로써 우리 의견이 배치되는 거죠.
-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의견수렴방법은 논의결과 공청회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공청회의 경우 위원장인 제가 공청회 주재자로 되어 14일 이상 공고하여 가능한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9월 말 진행할 예정이며 전체 위원님들께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인 다음 회의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아니 지금 다음 회의 날짜를 잡는 거예요? 아니면 공청회 날짜를 잡는 거예요?
- ○○○: 공청회가 끝난 이후의 회의 날짜입니다.
- ○○○: 그럼 공청회 날짜는 언제예요?
- 법무의회팀장: 9월 말 예정입니다.
- ○○○: 법정적으로 정해진 어떤 날짜가 있을 거 아니예요?
- 법무의회팀장: 10월 말 까지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우리가 공고하는 날짜가 20일이면 20일이니까 이 이후에 일주일 안에 공청회를 하고 그 공청회가 끝난 후에 며칠 후에 우리가 회의를 해서 기준점을 한다면 그런 게 있어요?

□ 법무의회팀장: 14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 날짜를 14일 여유를 두고 9월 말로 공청회 날짜를 잡고요. 그건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 2차 회의 때 이제 공청회에 나온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금액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거구요. 그거는 이제 10월 초에 저희가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2차 회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 ○○○: 그런데 보름인데 왜 지금 8월 14일인데 오늘이 그러면 9월 초에 9월 달 안에 끝냈으면은 좀 되지 그걸 10월까지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법무의회팀장: 저희가 이제 공청회 공고기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되고 그것도 주민들한테 다 알려야 되고 주민들도 모집할 수 있는 기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 ○○○: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공청회 날짜가 언제예요?

□ 법무의회팀장: 저희가 9월 말인데

□ ○○○: 그러니까 9월 말이라는 거는 광범위하니까 구체적으로 일자가 있는 것이 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9월 말쯤은 추석이에요.

□ ○○○: 추석 지나고 해야죠.

□ 위원장: 날짜가 10월 6일하고 10월 7일 10월 8일 3개 날짜

□ 법무의회팀장: 네 그거는 저희가 공청회가 끝나고 2차 회의 이제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날짜인 거고요. 공청회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추석 이후로 생각중에 있습니다.

- ○○○: 공청회는 그럼 찬반 패럴이 오고 주민들이나 누가 일정 명수 이상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 ○○○: 그 공청회 그런 공청회 일정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법무의회팀장: 네 저희 주재자는 위원장님이 되시고요. 저희가 발표자를 모집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발표자 분들 신청을 받고요. 그 중에 그분들 중에서 이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찬반 토론이 가능하신 분들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고요.
또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시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발표자분들이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하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신 주민분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구요. 최종적으로는 설문을 작성해서 저희가 지금 150만 원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150만 원에서 이것이 적정하다 아니면 너무 높다 아니면 기타 의견 이런 식으로 거기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릴 거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종 금액을 위원회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 ○○○: 그러면은 위원장께서는 공청회에 참석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참석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 법무의회팀장: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통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 ○○○: 그러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함께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야지 질의응답이 되는데 위

원장께서만 하시면 위원장만 하셔야 되는 거 잘 하시면 되고 저희는 공청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법무의회팀장: 네 일정 잡히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공청회를 하고 났을 때 우리 2차 회의를 6일 날 하느냐 7일 날 하느냐 8일 날 하느냐 그쵸?
- ○○○: 저는 10월 8일 추천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실까요?
- ○○○: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날짜를 저희가 6 7 8 자를 어떻게 할 건지
- ○○○: 지금 날짜를 잡자고요?
- 법무의회팀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모이신 상태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되기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 ○○○: 저는 10월 8일
- ○○○: 이게 왜냐하면 10월 3 4 5가 있고 9일부터 10일부터 11일까지 또 연휴가 있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가지고 여행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도 3시가 아니라 2시 10시 그냥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됩니다.
- 법무의회팀장: 6 7 8일 중에 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8일 10시 8일 어떠세요? 8일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 ○○○: 그럼 8일 10시 괜찮으시죠?

□ 위원들: 네

□ 위원장: 그러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해 다음 2차 회의는 10월 8일 10시에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10월 8일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이상으로 제1차 남동구 의정비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